

대전지방법원 2024. 4. 25 선고 2023가단216996(본소), 2023가단4209(반소) 판결
[대여금 · 부당이득금반환]

전 문

원고(반소피고) A

피고(반소원고) B

변 론 종 결 2024. 3. 14.

판 결 선 고 2024. 4. 25.

주 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2,1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23. 4. 7.부터 2024. 4. 25.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반소피고)의 나머지 본소청구와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본소, 반소를 합쳐 모두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N

청 구 취 지

1. 본소 청구취지

: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는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

에게 2,1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23. 4.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9%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반소 청구취지

: 원고는 피고에게 1,06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반소장 부분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가. 피고는 2022. 3. 28. 계원 16명으로 월 200만 원의 계불입금을 납입하되, 순번이 되어 계금을 수령하는 달에는 계금을 내지 않고 계금을 수령한 후에는 월 230만 원의 계불입금을 납입하여 3번 이후부터는 순차적으로 30만 원씩 이자를 받는 3,000만 원짜리 C계(이하 ‘이 사건 계’라고만 한다)를 조직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계의 3번(본인명의로 가입), 5번(2022. 6. 28.경 속칭 ‘D’로부터 승계를 받아 며느리 E 운영의 카페 이름인 ‘F’로 가입), 7번(본인명의로 가입), 13번(‘G’로 가입) 4구좌에 가입하였다. 원고가 수령할 계금은 3번 3,030만 원, 5번 3,090만 원, 7번 3,150만 원, 13번 3,330만 원이다.

다. (1) 원고는 2022. 5. 28. 3번 계금 3,030만 원을 수령하였는데, 그 중 1,000만 원은 피고가 차용하면서 피고는 종전 요양원 관련하여 차용한 1,000만 원을 합친 2,000만 원에 대하여 2022. 5. 28.자 차용증(갑1호증)을 작성하여 주었다. 피고는 2022. 5. 30. 원고의 며느리 E의 계좌로 1,750만 원(=1,000만 원 + 75만 원 + 675만 원)을 송금하였으며, 나머지 280만 원은 원고의 미납 계불입금과 공제하였다(원고 2023. 6. 8.자 준비서면). 이로써 3번 계금 3,030만 원은 모두 정산되었다.

(2) 원고는 2022. 7. 28. 5번 계금 3,090만 원을 수령하였는데, 피고는 원고의 요청에 따라 같은 날 2,000만 원을 H의 계좌로 송금하였다(H이 원고에게 '원고의 내연남 I으로부터 받을 돈 8,000만 원 중 2,000만 원을 원고가 우선 변제하면, H이 I으로부터 변제를 받아 2,000만 원을 변제하겠다'고 제안하였기 때문으로 보인다).

라. 이 사건 계는 원고가 7번 계금을 수령하기 전 2022. 9. 28.경 파계되었다.[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1호증, 을1, 3호증, 을2호증의 1, 2,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J이 조직한 또 다른 계에 가입하여 2,100만 원의 계불입금을 납입하였는데, 피고가 2022. 5. 6.경 J으로부터 2,100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가 'H으로부터 5부의 높은 이자로 3,000만 원을 빌렸는데, 위 돈 2,100만 원에 원고의 돈 900만 원을 추가로 보태어 3,000만 원을 빌려주면, 우선 H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고, 나중에 원고에게 갚아 주겠다'고 하여 2022. 5. 28. 3,000만 원짜리 현금보관증(갑2호증)을 받고 900만 원을 피고에게 추가로 지급하였다. 또 원고가 이 사건 계금으로 피고로부터 수령한 6,120만 원(=3,030만 원 + 3,090만 원)에서 원고가 지급받을 돈, 즉 피고가 조직한 또 다른 반지계 불입금 300만 원(=600만 원 - 300만 원), 그 동안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한 돈 4,920만 원 등 합계 5,220만 원을 공제하면 결국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할 돈은 900만 원(=6,120만 원 - 5,220만 원)이 된다. 이를 위 대여금 3,000만 원에서 공제하면 결국 남은 돈은 2,100만 원(=3,000만 원 - 900만 원)이 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2,1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피고가 2022. 5. 28. 원고에게 '변제기나 이자를 정함이 없이 3,000만 원을 차용한다'는 내용의 현금보관증을 작성교부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2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피고는 '위 현금보관증은 당일 계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이를 보관한다는 의미로 작성한 것일 뿐 실제 원고로부터 돈을 차용한 적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처분문서는 그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되는 이상 법원은 그 기재내용을 부정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없는 한 그 기재내용에 의하여 그 의사표시의 존재 및 내용을 인정하여야 하고 이를 믿기 어려운 수긍할 수 있는 이유의 설시 없이는 기재내용을 배척할 수 없고(대법원 1990. 11. 27. 선고 88다카12759, 12766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현금보관증 작성일인 2022. 5. 28.은 원고의 3번 계금수령일로서 계금 3,030만 원은 원고에게 실제 지급되거나 상호 정산됨으로써 그 지급이 모두 완료되었으므로, 계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위 현금보관증을 작성하였다는 피고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을 뿐더러 그 중 피고가 차용한 3번 계금 1,000만 원과 종전의 요양원 관련 차용금 1,000만 원 등 2,000만 원에 대하여는 같은 2022. 5. 28.자로 별개의 차용증(갑1호증)이 작성되어 있는 점, 현금보관증의 작성경위에 대한 원고의 주장에 설득력이 있고 피고도 진정성립을 다투지 않는 점, 실제로 원고가 현금보관증 작성일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은 2022. 6. 3. 피고의 통장으로 960만 원(=600만 원 + 360만 원)을 송금하였는데(갑6호증), 이는 원고가 언급하는 900만 원의 추가출연금에 근접하고, 원고와 피고, H 등 이 사건에 언급되는 사람들 사이에는 잦은 금전거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의 주장과 같은 경위로 '현금보관증'이 작성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2) 피고는 원고의 이 사건 본소청구는 자신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고 J과 원고 사이에 해결될 문제라고 주장하나, 원고의 본소 청구는 2022. 5. 28.자 현금보관증에 기하여 원고가 피고에 대한 채권에서 채무를 공제한 나머지 채권의 지급을 구하는 것이고, J은 사건의 경위를 설명하기 위하여 언급된 것에 불과하므로 피고와 무관하지 않다. 또 피고는 반지계와 관련하여 이미 정산이 완료되어 300만 원의 채무가 없다고 주장하나 그와 같이 볼 만한 근거가 없다.

(3)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현금보관증의 차용금 3,000만 원에서 원고가 스스로 인정하는 900만 원의 채무를 공제한 2,1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소장부분 송달일 이후로서(변제기의 정함이 없다) 원고가 구하는 2023. 4. 7.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4. 4. 25.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원고는 연 12.9%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그와 같이 불만한 근거는 없다).

3. 반소 청구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1) 3번 계금 관련

앞서 본 바와 같이 2,750만 원(=피고 차용금 1,000만 원 + E 송금 1,750만 원) 외 나머지 280만 원은 원고가 미납한 계불입금과 공제함으로써 이에 관한 3,030만 원의 정산이 모두 완료되었다.

(2) 5번 계금 관련

앞서 본 H에게 송금한 2,000만 원에다가 원고가 미납한 계불입금 630만 원, 반지계 불입금 120만 원 등 합계 750만 원을 공제하고, 이자조로 180만 원, 현금으로 160만 원을 각 지급함으로써 3,090만 원의 정산이 완료되었다.

(3) 원고가 3번 계금을 수령한 후 2회분 460만 원만 납입한 채 나머지 11회의 계불입금 2,530만 원(=230만 원 × 11회)을 납입하지 않았고, 5번 계금을 수령한 후에도 역시 2,530만 원(=230만 원 × 11회)의 계불입금을 납입하지 않아 합계 5,060만 원의 체무가 있다. 그런데, 원고가 7번, 13번의 계불입금으로 400만 원(=200만 원 × 2구좌)씩 5회분 합계 2,000만 원을 납입하였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계가 파계되어 이를 원고에게 반환하여야 할 것인바, 결국 피고의 원고에 대한 채권은 3,060만 원(=5,060만 원 - 2,000만 원)이 된다.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원고로부터 2022. 5. 28.자 3번 계금에서 1,000만 원을 차용하고 이전 차용한 1,000만 원을 합친 2,000만 원을 변제하기로 하면서 차용증을 작성하였으므로, 이를 공제하면 결국 원고는 피고에게 1,060만 원(=5,060만 원 - 반환할 7, 13번 계불입금 2,000만 원 - 3번 계금 차용금 2,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이 사건 계는 매월 200만 원씩의 계불입금을 납입하고 계금을 타는 달에는 불입금을 내지 않는 대신 그 이후부터는 230만 원씩을 불입하도록 되어 있는 사실, 원고는 4구좌에 가입하여 2022. 5. 28. 3번 계금 3,030만 원, 같은 해 7. 28. 5번 계금 3,090만 원을 각 수령한 사실, 이 사건 계는 원고가 7번 계금을 수령할 무렵인 2022. 9. 28.경 파계된 사실, 피고가 2022. 5. 28. 원고가 수령한 3번 계금 중 일부 1,000만 원을 차용하고 기존 차용금 1,000만 원 등 2,000만 원에 대한 차용증을 작성하여 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피고는 원고로부터 3번 계금 수령 후 2회의 계불입금으로 460만 원을 지급받은 사실, 원고로부터 수령한 7번, 13번의 계불입금 2,000만 원($=400만 원 \times 5회$)을 파계로 인하여 반환하여야 하는 사실은 스스로 인정하고 있다.

우선 원고가 미납한 계불입금이 얼마인지 보건대, 원고는 파계가 된 2022. 9. 28. 이후 7번 이후의 계불입금은 납부의무가 없으므로, 결국 원고가 납입할 계불입금은 3번 계금과 관련하여 2022. 6. 28.부터 2022. 8. 28.까지의 4-6번 불입금 690만 원($=230만 원 \times 3회$)이라고 할 것인데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3번 계금 수령 후 원고로부터 2회의 계불입금을 수령한 사실은 스스로 인정하고 있으므로 결국 3번 계금과 관련하여 230만 원($=690만 원 - 460만 원$)이 되고, 5번 계금과 관련하여서는 6회인 2022. 8. 28.의 계불입금 230만 원 등 합계 460만 원($=230만 원 + 230만 원$)이 된다.

여기서 피고가 인정하는 4,000만 원을 공제하면 결국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할 계불입금은 없다[피고는 반소로써 원고가 미납한 계불입금지급을 구하고 있는바, 피고가 구하는 반소장 부분 송달 다음날인 2023. 5. 18.부터 변론 종결일인 2024. 3. 14.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과 원고가 지급할 계불입금 460만 원을 합산하더라도 피고가 인정하는 채무 합계 4,000만 원을 상쇄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

4. 결론

원고의 본소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본소 청구와 피고의 반소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한다.

판사 문춘언